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, 이소라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856호
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위하여 의사소통수단 및
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입니다.
- 그러나 일례로 '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'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

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약 6.9%로 현저히 낮은 현실입니다.

이에 본 위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화,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관한 교육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